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72

2024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5일, 최재란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재난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이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음.
-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조사나 대응 매뉴얼이 없어 경제 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심한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교육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도 규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나. 교육재난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교육재난 피해조사와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라.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육재난 피해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5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72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붕괴 등 사회적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등) 및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등)을 의미합니다.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 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교육재난은 이러한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 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활동에 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과 그 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의미하며,²⁾
 - "교육재난지원금" 은 이와 같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 등에 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의미합니다.
-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2024년(상반기) 재난 및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풍수해, 추락 등의 재난 사고가 7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기간동안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 사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재난사고 발생 현황

연도	화재	풍수해	추락	실험실 안전사고	기타	계
2023년	17	24	2	1	8	52
2024년 상반기	9	-	2	2	5	18
계	26	24	4	3	13	70

- 그나마 교육재난지원금은 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18,088,533개)와 다중운집 인파사고(이태원 참사)에 따른 상담 치료비(1백만원) 지급이 있었을 뿐입니다.
 - 이처럼 동 조례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은 재난에 의한 피해발생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품 구입 등 금품에 한정해서 지원될 뿐, 재난 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명확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quot;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의 교육 활동에 있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

[표-2] 최근 3년간('22.~'24.)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연도	재난 유형	학교급	지원 대상	지원 인원 (단위:명)	지원 내역	지원 방법	지원금액 (단위:천원)	비고
2022	감염병 (코로나19)	유·초·중·고·특 수·각종·외국 인학교, 학평·고등기술 평생교육시설	모든 학생	928,183	자가검사 키트	물품	43,774,250	지원 수량 18,088,533개
	다중운집 인파사고 (이태원참사)	고	고등 학생	2	상담 치료비 지원	현금	1,212	

○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난에 대한지원은 금품만이 아닌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학업의 결손 등에도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지원의 범위를 경제적 지원에서 학업적 지원 등으로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바,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 및 재난 피해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제명 변경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명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기존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의 범위를 학업적 지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인바, 제명 역시 경제적 지원과 학업적 지원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재난'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대표성을 갖는 제명의 취지상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조의 제목을 '교육감의 책무'에서 '책무'로 수정하고 안 제2항과 안 제3항에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제2항에 대한 검토

- 우선 안 제3조제2항은 교육감이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 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 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를 제정하여 학교 안전 강화와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안전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⁴⁾.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교육안전 종합계획은 재난 유형별 안 전 관리 대책 및 사고 발생 이후 대응 매뉴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을 뿐,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은 포함되어 있 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안 제3조제2항은 재난으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 도록 교육감에게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동 개정조 례안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2항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5)에 따라 '교육활동'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

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 1. ~ 3. 생략
- 4.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 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 10. 30.).

- 그러나 안 제3조제2항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의한 교육활동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바, 이를 수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3조제3항에 대한 검토

- 다음으로 안 제3조제3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21~'24)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등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3] 서울지역 학교급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계
2021	1,051	3,795	5,188	2,877	104	55	13,070
2022	1,131	8,438	9,987	4,728	101	98	24,483
2023	1,158	11,325	12,233	6,191	147	135	31,189
2024.9	904	8,175	8,959	4,943	112	117	23,210
합계	4,244	31,733	36,367	18,739	464	405	91,952

○ 이에 안 제3조제3항은 교육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교육지원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지원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5)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안 제4조, 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재난지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기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적 지원 포함)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한 것인 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교육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규정한 조의 제목을 '지원 등'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재 동 조례 제6조가 교육재난의 경제적 지원인 교육재난지원 금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 을 경제적 지원과 학업적 지원을 구분하고 있는 바, 제6조의 제목을 '지원'으로 유지할 경우 동 조가 경제적 지원과 학업적 지원을 모 두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바,

동 조 제목을 '지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변경하여 동 조항이 교육재난의 경제적 지원인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7) 교육재난 피해 조사(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 도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명시 되어 있고,6) 이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한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 지체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통해 학교에서 재난 상황 발생 시, 학교 및 직속기관용 보고 서식을 통해 사건 발생 개요, 초동대응 및 경과, 피해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 으며⁸⁾, 이에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사고 현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바, 안 7조는 재난 에 따른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이외 교육적 피해에 대한 현 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조치도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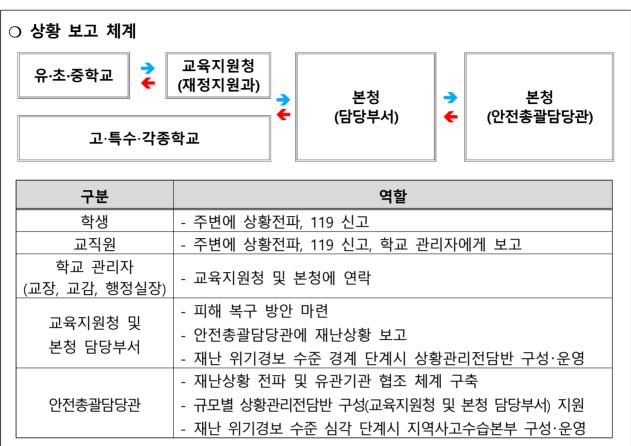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② ~ ③ (삭제)

④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2024}년도 교육안전 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 2023.12., p.125.

[표-4] 서울시교육청 재난·안전사고 상황 보고 체계



- * 출처:「2024년도 교육안전 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 2023.12,, pp.2, 76.
- ** 학교안전 종합계획은 3년 주기로 교육부에서 10월말 수립하고, 교육청은 매년 12월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도록 하고 있음.
 - 8)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는 교육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 감이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학교 구성원 및 학교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및 인파 밀집 상황 등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는 것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9).

[표-5]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중점 추진대책 요약표)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구분
WIRF	• 재해취약성 사전점검	• 학기 계기 학교시설 전수점검 실시	-
예방 	• 안전교육	• 연간 51차시 안전교육 의무 실시	기타
대비	• 매뉴얼 정비	• 학교시설 재난·사고 표준매뉴얼 제정	제도
대응	• 재난상황시스템 운영	• 학교안전분야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제도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정부 부처의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 재 난 및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시 개정하도록 하여 실제 재 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0).
- 이처럼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안 8조는 기존 재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교육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9) 학업 지원 등(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제2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교육재난의 지원 범위를 기존 경제적 지원(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학업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인바, 안 제9조는 학업적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여 실제 학업 지원

^{9)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교육부, 2024.9., p.12.

^{10) 「2024}년 교육안전 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 2023.12., p.19.

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9조제2항의 '교육과정'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명시된 '교육활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 10. 30.),
 - 그러나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고 안 제9조제2항의 '교육과정'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명시된 '교육활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굳이 명칭을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0)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는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에 있어 교육감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을 소속으로 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11).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112(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2 제 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 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그리고 교육부는 이러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은 교육부 장관이,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 시·도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교육감'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재난에 대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안 제10조는 정부 부처의 재난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재 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²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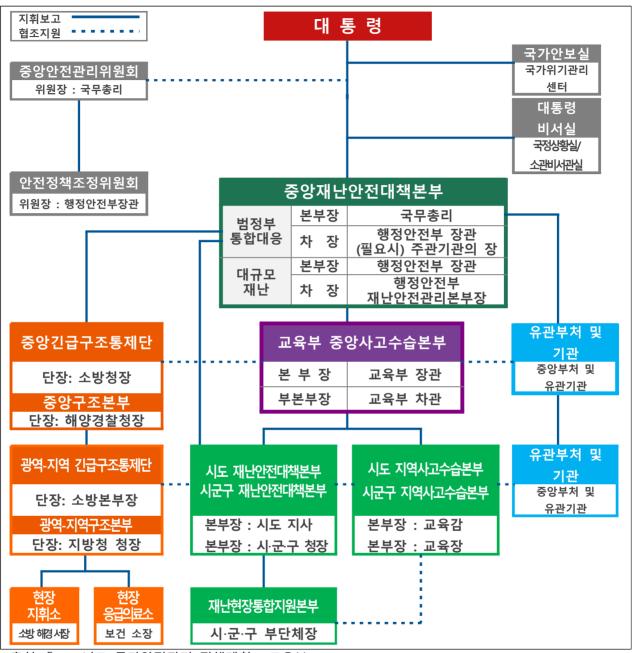
② 시 ·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 도지사가 되고, 시 · 군 ·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6]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재난대응체계도)



* 출처: 「2025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교육부, 2024.9., p.4.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없음.

-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Ⅲ.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교 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를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적·학업적 지원을 통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감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재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난지원금을"을 "교육재난에 대하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 등)"을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9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교육청</u>	서울특별시교육청_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제1조(목적)
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	
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	교육재난에 관한 경제
<u>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u> 학생의	적·학업적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u>교육감의 책무</u>) (생 략)	제3조(<u>책무</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u>〈신 설〉</u>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u>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u>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
	<u>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u>
	<u>야 한다.</u>
<u> </u>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
	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1. ~ 5. (생략)

제6조(지원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에 대하여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재난 피해 조사)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 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 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 다.

제9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 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 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 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
	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
	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